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저장용기등 종류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저장용기등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 작성·발급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